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년 1월 31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[김영희 의원 발의]

1. 제안이유

- 오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.
- 나. 지원 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정함(안 제4조).
- 다. 영주귀국주민 지원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정함(안 제5조).
- 라.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하여 정함(안 제6조).
- 마.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.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0년 2월 7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447-701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23, · 팩 스 : 031)375-2875
 - 전자메일 : pk1121@korea.kr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 명 :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견제출자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

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”(이하 “영주귀국주민”이라 한다)이란 러시아 사할린(이하 “사할린”이라 한다)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오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영주귀국주민 1세대
2.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,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

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·홍보
2.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
3.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
4. 의료기관,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·번역 서비스 제공
5.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
6. 문화·체육활동 기회 제공
7.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·문화 교육
8.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,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
9.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
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)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(이하 “쉼터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단체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포상)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「오산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